

【 7 】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

제출연월일 : 1998. 6. 19.

제출자 : 양주군수

 청취 이유

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도시 기본계획 승인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 주요 골자

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반영 사항(신규)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 설	공원묘지 (묘지공원)	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산20-1일원	-	411,700	411,700	

 도시계획 시설 결정(안) :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도시계획법 제10조의2

 관련사업계획서 : 별첨 예산 수반 사항 : 해당없음 사전 예고 결과 : 양주군 공고 제1999-196호(99. 6. 7)로 공고 중 기타 참고 사항 : 해당없음

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(안)

(묘지공원 신설)

1999. 6

양 주 군

① 계획의 배경

-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일원의 운경공원내 묘지 약 2,000여기가 유실·훼손됨에 따라 향후 피해재발방지를 위해 피해분묘와 피해 우려 분묘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
- 이에 본 계획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함에 따라 기존묘지와 이장대체부지에 대하여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묘지공원 신설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(안)의 일부를 변경

② 계획 범위 및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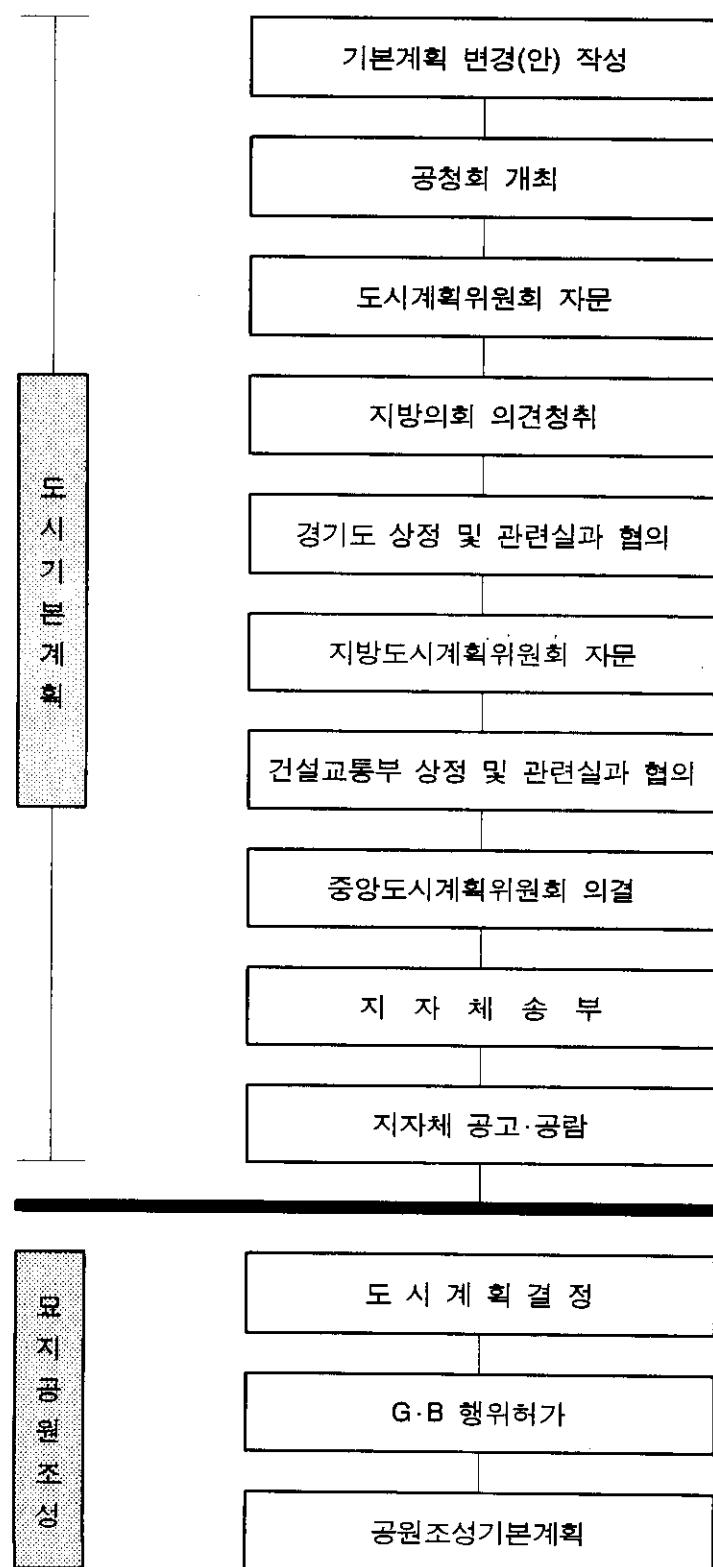
시간적 범위

- 기준년도 : 1996년
- 목표년도 : 2016년(20년계획)
- 단계별 개발계획
 - 1단계 : 1996년~2001년
 - 2단계 : 2002년~2006년
 - 3단계 : 2007년~2011년
 - 4단계 : 2012년~2016년

공간적 범위

- 의정부 도시계획구역(161.005km^2)내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산20-1 일원
- 면적 : 0.41km^2

③ 추진절차



④ 기본계획 변경내용

기본방향

- 도시전체를 포용하는 녹지체계 구상
- 북한산 국립공원, 수락산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
- 시민의 이용성, 이용형태에 따라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배치
- 공원시설들은 공원의 종류 및 기능에 따라 배치

기본계획(안)내용

■ 도시자연공원

-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 및 위락 등의 이용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락산, 천보산을 도시자연공원으로 계획

■ 균린공원

- 양주군 주내면 국도3호선변에 통일안보·역사교육의 장으로서 평화동산 조성을 위한 균린공원 계획
- 택지개발지구의 균린공원계획 반영
- 직동공원내 집단취락지 일부 해제

■ 체육공원

-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군부대이전적지(LAGUARDIA)에 체육공원계획

■ 묘지공원

- 자일동 일원에 납골당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묘지공원 계획

■ 유원지

- 장암온천지구의 유원지 계획

주요변경내용

■ 묘지공원

-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일원의 집단묘지에 대하여 수해로 인해 유실·훼손된 묘지의 이장대체부지 조성과 기준묘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묘지공원으로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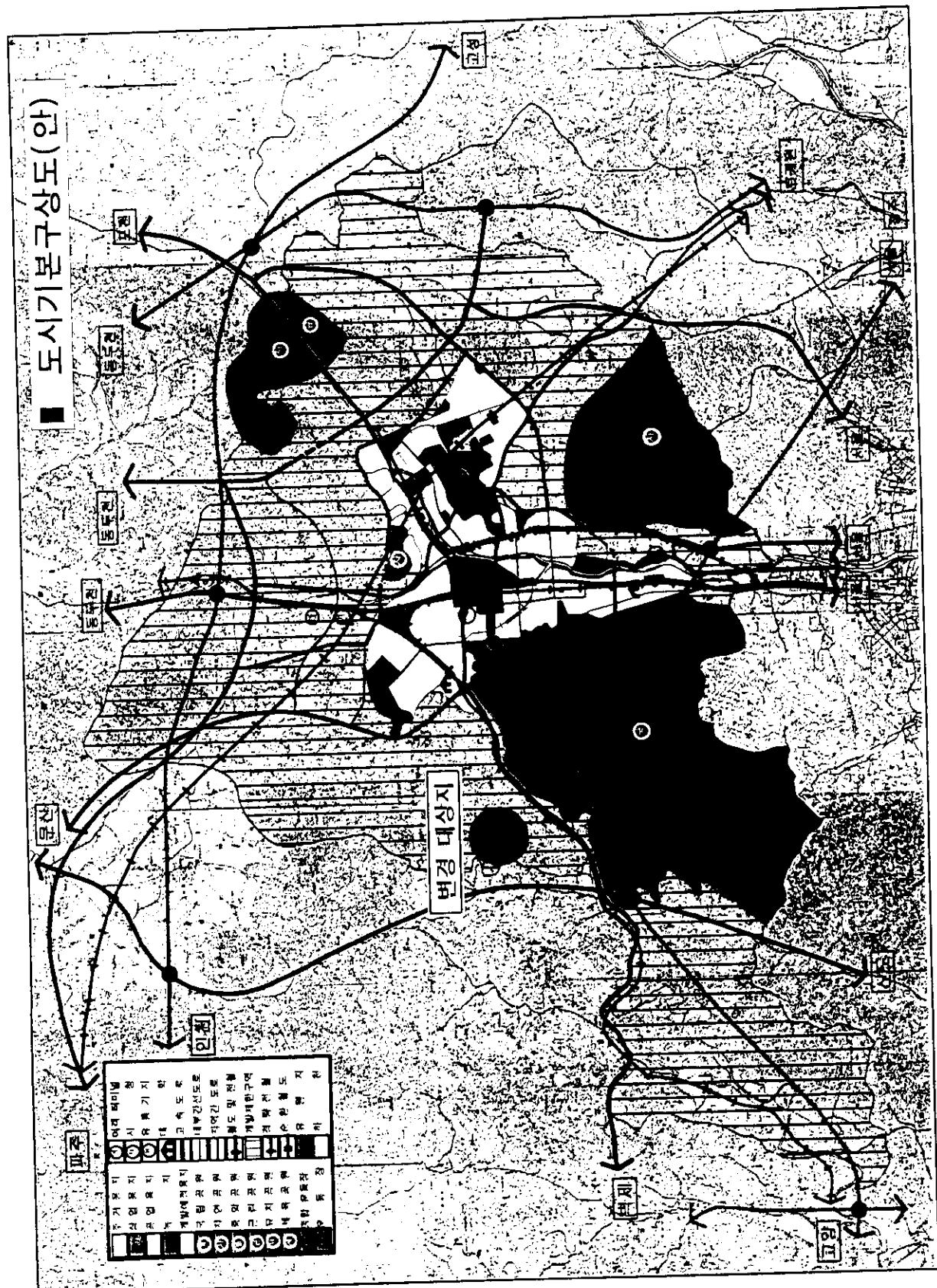
공원·녹지계획(총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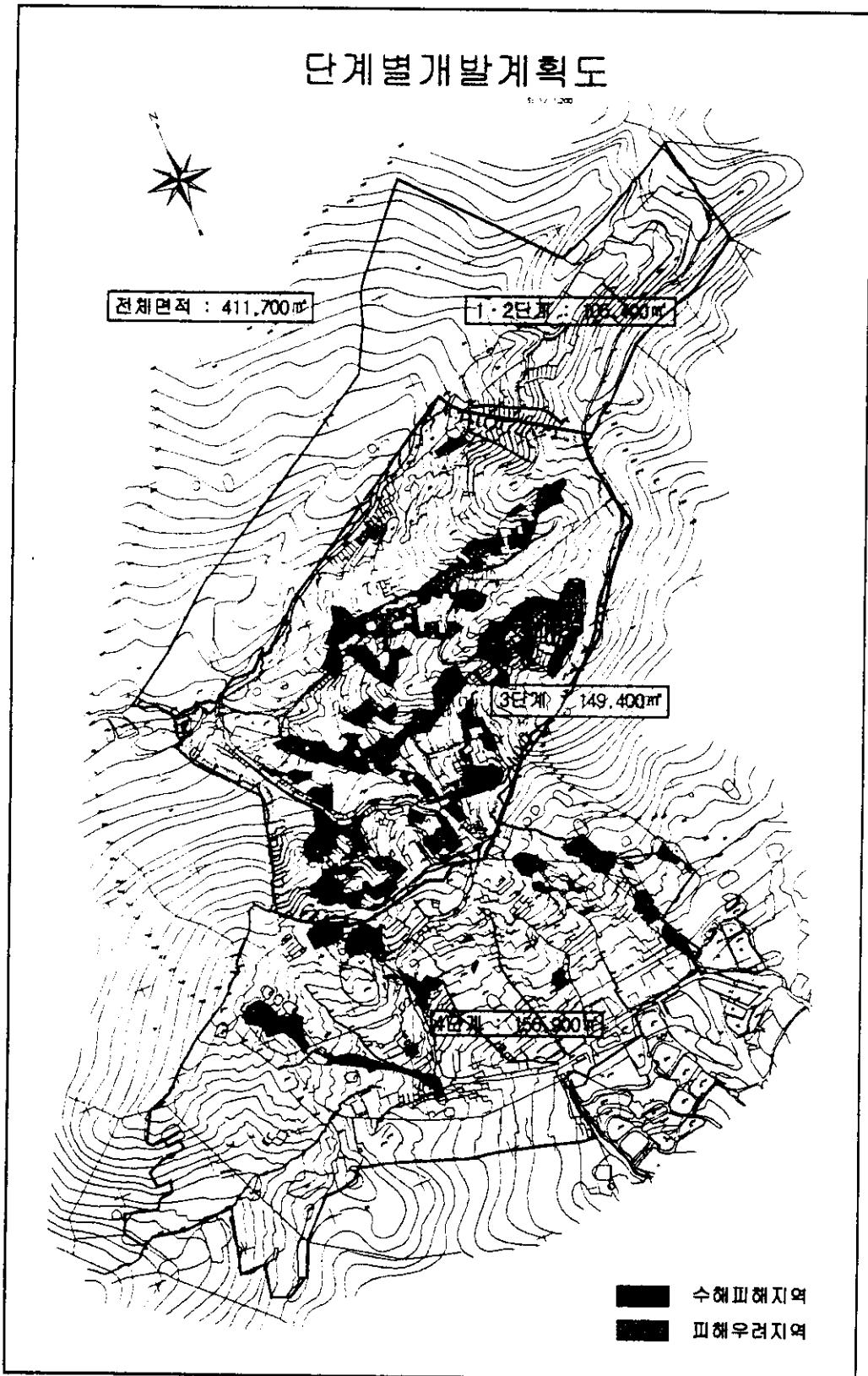
구 분	면 적(km ²)	개 소	비 고
계	39.02 (26.76)	90 (56)	() : '95년
도시공원	소 계	15.21 (2.95)	89 (55)
	도시자연공원	11.60 (0.376)	3 (1)
	근린공원	2.85 (2.48)	13 (6)
	어린이공원	0.13 (0.095)	70 (48)
	체육공원	0.04 (-)	1 (-)
묘지공원	묘지공원	0.59 (-)	2 (-)
	자연공원	23.81	1(1)

• 1인당 공원면적
- 10.1 m² ('95)
→ 32.5 m² (2016)
: 도시공원 면적
기준(묘지공원,
북한산 국립공
원 제외)

단계별 개발계획

- 이장대체부지 및 기준묘역에 있어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비(0.41km²)
 - 1·2단계(1996~2006년) : 0.11km²(이장대체부지 조성)
 - 3 단계(2007~2011년) : 0.15km²(기준묘지 정비)
 - 4 단계(2012~2016년) : 0.15km²(기준묘지를 정비하여 납골당과
공원화시설 적극수용)





都 市 計 劃 法	施 行 令	施 行 規 則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第2章 都市計劃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第1節 都市計劃의 立案 및 決定</p> <p>제10조의2(都市基本計劃의 树立) ①서울特別市·直轄市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都市計劃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는 20年을 單位로 하여 長期都市開發의 方向 및 都市計劃立案의 指針이 되는 都市基本計劃을 树立하 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 承認을 얻은 都市基本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同様이 진다.</p> <p>(②)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 市基本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 계地方議會의 의견을 듣고(市長 또는 郡守가 마지막 地方議會의 의견을 듣기申請한 경 우를 제외한다)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 調한 후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 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.(改正 91. 12. 14)</p> <p>(③)建設部長官은 第1項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市長 또는 郡守에게 交付하고, 市長 또는 郡守는 자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.</p> <p>(④)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도시계획</p> <p>제7조(도시기본계획의 수립) ①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.(개정 82.10.23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 도시계획구역 2. 제1호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진정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 구역과 관계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진정부장 관이 승인하는 도시계획구역 <p>②도시기본계획에는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 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개정 88. 2.16, 91. 5.11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성격 2. 도시지표 3. 도시기본구상 4. 인구배분계획 5. 토지이용계획 6. 교통계획 7. 조성계획 	

<p>제10조(都市基本計劃) 都市는 지재없이 이를 公告하고 시민에게 공시시켜야 한다.</p> <p>都 市 基 本 計 劃</p> <p>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都市基本計劃에 대 하여 5년마다 그妥當性與否를 檢討하여 都 市基本計劃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(改正 91. 12. 14)</p> <p>(5)都市基本計劃의 制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 은 本條領속으로 정한다.</p> <p>(本條削除 81. 3. 31)</p>	<p>5. 토지이용계획 6. 교통계획</p> <p>8. 공공시설계획 9. 산업개발계획 10. 환경계획 11. 공원녹지계획 12. 사회개발계획 13. 도시방재계획 14. 재정계획 15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③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비상의 규정에 의 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 다.(신설 88. 2.16)</p> <p>④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적인 기본구상도(총적 2만5천분의 1 대기 5만분의 1 도면을 사용하여 야 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(개정 88. 2.16) (전문개정 81. 9.25)</p>
<p>제11조(都市計劃이立案) ①市長 또는 郡守는 그 관할都市計劃區域안에서 施行할 都市計劃 을 第10條의2第1項의 规定에 의한 都市基本 計劃의 내용에 적합하도록立案하여야 한다. 다만, 建設部長官은 國家計劃과 관련된 경우에 는 職權 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요청 에 이하여 관할 市長 또는 郡守의 의견을 들 은 후 스스로立案할 수 있다.(改正 91.12.14)</p>	